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2일, 윤건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 8. 2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9. 3.)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 의원)

헌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에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하였고, 2023년 3월 23일에는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도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가1)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하였으나, 시한이 도과되어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는 특정 장소 인근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게 되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헌법기관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도입하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있음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의 자유 보장과 주요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두고(안 제11조제3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여 집무실, 관저, 각 공관 및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에 적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내지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 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반대의견: 용혜인 위원)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예외적 집회·시위 허용 조건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집회·시위 신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가제 성격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 위헌 시비가 불가피해 보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에도 새롭게 집회 절대 금지 구역에 포함되었고,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청와대 사랑채가 포함되는 경우 이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더 후퇴한 개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포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